

2016년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계획

재난취약시설에 대한 계절별·시기별 특화된 안전관리로 재난위험요인을 사전 적출·해소하여 재난을 예방하고, 시설소유자 등 관계인 참여를 유도하여 스스로 정비하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함.

※ 재난취약시설 : 계절 및 시기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이 많은 시설물

I 추진근거
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(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의 재해예방조치)
-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경감 대책(UN ISDR) 연계 위험시설 재해경감 개선

II 추진방향

- 재난취약시기별 점검대상시설 차별화 - 해빙기, 우기, 동절기 등
- 재난취약시설 중점 안전관리 - 민간전문가 합동조사
-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 - 구민참여감사관, 시설관리자 등 민간인력 참여유도

2015년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계획 평가

- 해빙기·우기 등 재난취약시기에 특정관리대상시설 포함 2,739개소(중복) 시설점검 실시, 419건의 안전위험요인을 적발하고 응급조치 및 정비하여 안전사고예방에 기여하였으나
- 재난취약시설 관리주체(소유자 등) 안전의식 결여로 적출된 안전위험요인의 항구적인 해소가 지연되고 있음

⇒ 재난취약시기별 점검대상을 차별화하고 발견된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주체의 안전조치 미 이행 시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조치 이행 필요

III 추진계획

⇒ 개정된 「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 지침, (국민안전처, 2016)」 반영

2015년 대비 달라지는 점

-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방안 정기정비 실시
- 재난취약시기에 따른 위험시설물 민간전문가 합동조사 실시
- 안전조치 이행여부 점검 및 구민참여감사관 적극 활용

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- 지정 및 안전등급 재확정

- 특정관리대상시설 재지정 및 관리방안 일제정비
 - 정비기간 : 2016년 3월~5월 (상반기 안전점검 병행)
 - 정비방법 : 시설관리부서에서 소관시설 자체 정비
 - 정비내용 :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지침(국민안전처)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리대상 제외시설 지정 및 관리방안 재정비
-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재확정
 - 조사기간 : 2016년 9월~12월 (하반기 정기점검 병행)
 - 조사방법 : 시설관리부서(정기점검) → 재난총괄부서(확인)
 - 조사내용 :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 재확정

[안전등급에 의한 관리방법]

구 분	중점관리시설			재난위험시설	
	A등급	B등급	C등급	D등급	E등급
안전점검	반기별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			월 1회 이상	월 2회 이상
관리카드	전산입력 관리		전산입력 관리 및 관리카드 기록		
관리책임	시설관리부서장(부 : 담당자)			담당국장(부: 시설관리부서장)	

- ※ 중점관리시설 A·B·C급 : 이상없음·양호 또는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시설
- ※ 재난위험시설 D·E급 : 주요부재의 중대한 결함 및 손상으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

㉔ 재난취약시기별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

○ 재난취약시기별 점검대상 선정을 위한 표본조사 실시

- 조사부서 : 재난총괄부서, 시설관리부서, 민간인력(전문가, 구민참여감사관 등)
- 조사방법 : 시설관리부서 자체 선정 후 재난총괄부서 전문가 합동조사
- 조사내용 : 재난취약시기별 안전점검대상 시설 중 위험시설 선정 표본조사
[재난취약시기별 안전점검 대상시설]

구분	취약시기	중점 점검대상시설
1월	설대비	·복지관, 경로당,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
2~3월	해빙기	·대형건축공사장, 축대 및 옹벽, 급경사지 등
4월	행락철	·노래방, 게임장, 청소년수련관 등 다중이용시설
5월	상반기	·특정관리대상시설물(공공청사 등)
6월	우기대비	·대형공사장, 축대 및 옹벽, 노후건축물 등
7월	우기	·급경사지 및 절개지, 축대 및 옹벽, 공사장 등
8월	혹서기	·수영장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
9월	추석대비	·아파트상가, 전통시장,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
10월	하반기	·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전수 및 신규시설
11월	동절기대비	·동절기 중단건설공사장, 대형 토목·건축공사장
12월	동절기	·건설공사장, 급경사지, 축대 및 옹벽 등
수시	기상특보 등	·사고발생 시설, 위험요인 발견 시설 등

○ 재난취약시기별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시

- 점검시기 : 해빙기(3월), 우기(6월), 동절기(11월) 등 재난취약시기
- 점검대상 :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취약시설
- 점검부서 : 시설관리부서(자체점검) → 재난총괄부서(전문가 합동점검)
- 점검방법 : 균열 등 위험요인 육안점검 및 점검결과 통보(시설관리부서)
적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합동점검(재난총괄부서)

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 강화

○ 위험요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현장확인 점검

- 점검시기 : 정기점검 실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
- 점검대상 : 안전조치 결과 미 통보시설(시설관리부서 → 재난총괄부서)
- 점검부서 : 재난총괄부서(조치여부 총괄관리)
- 주요내용 : 구민참여감사관 등 민간인력 적극 활용으로 안전의식 제고
안전조치 시 관리대상 해제 검토 및 조치지연 시 조치독려

○ 안전점검 결과 이력관리 강화 - 재난관리시스템(NDMS) 입력

- 시설관리부서별 점검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서 작성
(기준 : C·D·E 등급만 작성 → 개선 : A, B등급도 포함)
- 안전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(시설관리부서)
- 중대한 결함 또는 위험요인 발견시 사용제한, 금지 등 행정조치
- 시설소유주체에 대한 점검결과 통보 및 안전조치 지시
 - 공공시설 : 기예산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긴급보수
 - 사유시설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등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조치

V 협업사항

㉔ 관계인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전 안내 철저 (시설관리부서)

- 관계인이 안전점검 현장에 입회하여 소유시설의 위험도를 확인토록하고
구민참여감사관을 활용하여 점검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의견(제보) 등 반영

㉔ 관계기관이 주관하는 평가 대비 철저

- 국민안전처 「재난관리실태 평가」의 항목으로 재난총괄부서 기본계획 수립
에 따른 시설관리부서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·이행 철저. 끝.

별첨

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

(2016. 2. 1 기준, 단위 : 개소)

구분	총계	중점관리시설				재난위험시설		
		소계	A등급	B등급	C등급	소계	D등급	E등급
합계	945	936	503	388	45	9	8	1
건축물	917	908	503	371	34	9	8	1
시설물	28	28	-	17	11	-	-	-

부서별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현황

부서명	소관시설	개수	부서명	소관시설	개수
일자리경제담당관	전통시장, 판매시설	8	주택과	아파트, 공동주택	170
행정지원과	구청, 구민회관 등	3	도시계획과	대형광고물	24
자치행정과	동주민센터	17	도시재생과	공사장, 담장 등	17
생활체육과	운동시설, 체육센터	3	건축과	연립주택, 공사장	576
교육문화과	종교시설, 판매시설	55	교통지도과	상도종합건물	1
복지정책과	사회복지관	7	도로관리과	지하차도, 육교	12
사회복지과	장애인복지관 등	4	보건위생과	숙박시설, 고시원	17
어르신청소년과	장례식장, 복지관 등	8	보건약과	요양병원, 의료시설	8
보육여성과	어린이집, 복지시설	14	의회사무국	동작구청 제2청사	1

재난위험시설 현황

구분	시설명칭	준공년도	위치	지정사유
E등급	신노량진시장	1968년	노량진동 307-70	벽체 균열 및 철근 노출
D등급 (8)	노량진아파트	1974년	노량진동 227-5	철근 노출 및 건물노후
	사당동 종합체육관 신축 공사현장	-	사당동 산 21-9	과거 인명피해 발생시설
	대형공사장(6개소)	-	상도, 흑석, 사당동	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등